

일본의 전파이용료제도

역/황인영 자문위원

1. 서 언

무선국의 면허인으로부터 무선국의 종별(種別) 등에 따라서 매년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전파 이용료제도도입을 포함한 전파법 일부개정법안이 일본의 123회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 5월29일에 성립되었다. 지금까지 무료였던 전파이용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전파이용 제도의 획기적인 변혁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전파이용료는 전파의 감시(監視) 등, 전파의 안정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만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후 전파행정에 재정면에서의 뒷받침이 마련된 것으로 필요한 시책을 정확히 실시하고 고도정보사회 구축을 추진시켜야 할 우정성의 과제·책임 또한 커졌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파이용료는 제도로서 막 태어난 상태로 원활한 기능을 하고 예정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전파이용료를 부담하는 면허인이나 그밖의 여러 관계자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다음에는 제도창설의 취지, 제도의 내용 등에 대해 간단하게 기술해 본다.

2. 전파이용료제도 창설의 취지

일본의 전파이용은 1985년의 전기통신 자유화, 각종 규제완화, 전파기술의 진보등으로 이동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어 왔고, 통신·방송 등의 수단으로 국민생활·산업활동에 있어서의 전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원활한 전파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무선국의 증대나 무선국의 급증에 따른 사무처리의 증대등으로 전파감시의 강화나 사무처리의 효율화 등 전파감리행정(電波監理行政)의 과제도 커져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여러가지 있으나 이 가운데 전파감시(電波監視)·무선국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와 같이 무선국 전체의 수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말하자면 면허인의 공익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 수익자는 면허인에 한할 것
 - 특히 면허인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특정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
- 으로 이들 비용은 조세(租稅) 형태로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것 보다도 수익자인 면허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비용부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 맞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비용들이 지금까지는 일반재원으로 충당하여 왔으나, 이것은

- ① 역무제공이 특정 면허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면허인 전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역무와 수익의 대응이 일대일 대응관계가 아니라는 점등으로 수수료는 타당치 않다는 것

- ② 이제까지 무선수는 비교적 적고 그 금액 또한 적어 국가의 전신전화공사 등 공공적분야의 무선국이 전파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를 무선국의 운용에 의한 효과가 일반 국민에 환원된다고 생각된다는 것

등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앞으로 무선국 수의 증대나 불법무선국의 증대를 배경으로 필요 한 전파행정경비도 급속하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

또한 전파의 이용형태도 지금까지의 공공적 이용으로부터 민간의 개인이용, 산업활동에 있어서 이용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그 경향은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면허인을 수익자로 하는 사무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원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면허인과 일반국민들 사이의 비용부담의 불공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이란 면을 고려하여 이들 비용을 면허인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전파이용료제도는 이와같은 창설취지에서

①전파의 감시, 무선국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와 같은 무선국 전체의 수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무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전파이용공익비용」이라 함)을 충당하기 위해 무선국의 면허인으로부터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전파이용료수입은 예산에 정해진바에 따라 모든 「전파이용공익비용」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며 잉여분에 대해서도 다음해에도 계속 필요한 전파이용공익비용에 충당하도록 한다.

는 두 가지를 주축으로 하는 제도이다.

덧붙여 말하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외국들에서는 이미 면허료, 전파사용료 등 어떤 형태로든 전파이용에 대해 금액을 징수하여 이것을 전파행정 경비에 충당하고 있다.

3. 전파이용료의 징수(개정법 103조의2)

(1) 전파이용료의 징수 근거

면허인은 전파이용공익비용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허인이 부담해야 할 전파이용료로서 무선국의 면허일 또는 그 후 매년 그 면허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시작하는 각 일년 기간(면허일로

부터 해당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의 기간이 일년 미만일 경우는 그 기간)에 대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2) 전파이용료의 징수 대상

전파이용료의 징수대상은 면허인이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를 정해놓고 있다.

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기로 된 무선국의 면허인에 대해서는 처음해의 전파이용료는 납부하지 아니 한다.

나. 전파이용료의 감면

아래의 무선국 면허인에 대해서는 전파이용료가 감면된다.

①전파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무선국 – 면제

②지방공공단체가 개설하는 소방, 수방용 무선국은 면제·방재용 무선국(방재행정무선)의 전파이용료는 2분의1로 감액한다.

그 취지는 이들 무선국은

- 주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재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된 무선국이라는 점.
- 지방공공단체가 자체 정비를 해야함이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다는 점.
- 이들 무선국의 전파이용료 감면 상당액은 규모가 적고, 다른 면허인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부담의 공평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방재용무선국에 대해 2분의1로 감액한 것은 방재용무선국은 소방·수방용 무선국과 달리 일반적인 행정정보의 전달도 하고 있어 방재 이외의 용도에 사용될 때도 있어, 그 요소를 2분의 1로 보고 이를 고려하여 전파이용료도 2분의1에 상당한 것으로 하는 것이다.

다. 국가에 대한 적용 제외

전파이용료는 국가의 과징금의 일종으로서 각종 과징금과 같이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기

로 한 것이다.

4. 전파이용료의 액수

(1) 전파이용료 액수 규정 방법

전파이용료의 액수는 면허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점으로 그 날 이후 1년동안 해당분을 매년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무선국의 종별에 따라 년간 금액을 법률중에 규정하고 있다(〈표 1〉 참조).

전파이용료의 액수를 법으로 정하는 이유는 전파이용공익비용의 내용과 전파이용료의 적정액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알맞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2) 전파이용료 액수 산정의 고려사항

전파이용료는 그 취지에 따라 전파이용공익비용을 비용의 내용과 전파의 이용형태에 따라 공평하고 적절하게 부담시키도록 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전파의 감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총액을 모 든 무선국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②종합무선국관리파일 (무선국의 제원(諸元)을 대형 컴퓨터를 써서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총액을 무선국마다 종합무선국관리파일에 기록하는 면허에 관한 사항의 정보량에 따라 배분한다.

이로써 개인의 무선국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것을 각각 계산하여 이것을 합계한 금액을 전파이용료의 액수로 한 것이다(백엔미만은 사사오입).

(3) 전파이용료 액수 구분의 고려사항

전파이용료의 액수는 통신의 양태(우주무선통신 인가 그밖의 것인가, 이동통신인가 고정통신인가, 방송인가의 여부),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우주인가 지상인가, 이동되는 것인지 아닌지) 등에 차안해서 무선국을 9개로 크게 구분하여 정

한다.

5. 전파이용료의 징수 절차

전파이용료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채권일반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

(1) 납부기한

각 연도 무선국의 면허날짜를 「응답일」로 하고 면허일 또는 응답일(이하 기산일이라 함)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일 또는 응답일부터 시작되는 일년의 기간(일년 미만일 경우는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2) 납부방법

전파이용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기산일 이후에 국가에서 송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일본은행의 본점·지점·대리점 등에 납부하게 된다.

(3) 전납(前納)

면허인의 납부 편의를 고려하여 희망에 따라 다음해 이후의 기간에 대한 전파이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4) 독촉, 체납처리, 연체금

국가채권 일반 예에 따른다.

①미납의 경우에는 독촉장에 기한을 지정하여 독촉한다.

②독촉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전파이용료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처분한다.

③납부기한보다 늦어질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기타 우정성령으로 정해진 때를 제외하고 연체금을 징수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5) 면허장에 주소의 기재

전파이용료의 징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번 법 개정 중에 면허인의 주소를 면허장의 기재사항에 추가한다.

6. 전파이용료의 특정재원화

전파이용료를 전파이용공의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특정재원화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개정법 제103 조의 3).

(1) 동조 제1항은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해당년도 전파이용료 징수액의 예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정함으로써 전파이용공의비용의 재원에 충당할 것을 정하고 있다.

(2) 동조 제1항의 단서에는 일회계년도의 전파이용료 수입 예산액은 당해년도에 필요한 전파이용공의비용의 예산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 초과 금액에 대해 전파이용공의비용에 충당하지 않고 기타 목적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음

〈표 1〉 전파 이용료

무선국의 구분	이용료액(연액)	대표적인 무선국의 예
1. 이동 무선국(3항에서 5항까지와 8항의 무선국 제외, 2항에 있어서도 같음)	600(엔)	자동차 전화, MCA 이동국 퍼스널 무선, 선박국
2. 이동하지 않는 무선국으로서 이동무선국 또는 휴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수신설비와 통신하기 위해 육상에 개설한 것(8항의 무선국 제외)	12,100(엔)	기지국(자동차 전화) 휴대 기지국, 무선흐출국 해안국, 항공국
3. 인공 위성국(8항의 무선국 제외)	29,600(엔)	통신위성, 방송위성
4. 인공위성국의 중계에 의한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국(5항 및 8항의 무선국 제외)	30,000(엔)	인텔셋트 지구국
5. 자동차 선박 등 이동하는 것에 개설하거나 또는 휴대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공위성의 중계에 의해 무선통신을 하는 것(8항의 무선국 제외)	3,600(엔)	선박 지구국 항공 지구국
6. 방송을 하는 무선국(3항 및 7항의 무선국 제외)	29,700(엔)	TV방송 중파방송, FM방송
7. 다중방송을 하는 무선국(3항의 무선국 제외)	900(엔)	음성 다중 방송 문자 다중 방송
8. 실험 무선국 및 아마추어 무선국	500(엔)	실험국, 아마추어 무선국
9. 기타 무선국	20,200(엔)	고정국

을 정한 것이다.

(3) 전파이용료는 전액을 전파이용공의비용 재원에 충당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전파이용료 수입 중에서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또는 결산결과로서 당해년도에 있어서 전파이용공의비용에 충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이것을 다음해 이후의 전파이용공의비용의 재원에 충당하는 것으로, 전파이용료의 특정재원화의 담보를 도모하고 있다.

7. 시행기일 및 경과조치

(1) 전파이용료관계 시행기일은 1993년 4월 1일로 한다.

(2) 이 법률의 시행에 있어 현재 면허를 받고 있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1993년 중에 해당무선국의 면허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전파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날까지는 전파이용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